


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의

# 업무협약서



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(이하 “경북센터”)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컨소시엄기관”)은 “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경북센터와 컨소시엄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우수 세대융합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에 그 목적을 둔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각 기관은 협약의 목적 범위 안에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,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한다.

**제3조(협력내용)** 협약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.

## 1. 협약의 범위

- 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장년층 발굴 협력
- ② 발굴한 청년과 장년층의 세대융화를 위한 매칭데이 개최 협력
- ③ 세대융합 창업팀의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멘토링 협력
- ④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 가속화 협력
- ⑤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협력

## 2. 협약 당사자간 역할

협약당사자	역할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수 청년, 장년 발굴 협력</li> <li>- 청·장년이 매칭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협력</li> <li>-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의 사후관리 협력(BI 입주 등)</li> </ul>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대융합 캠퍼스 사업 운영</li> </ul> (발굴, 매칭, 육성, 투자, 교육, 시제품제작 지원, 멘토링, 글로벌진출등)

제4조(실무협의회 운영)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협력 과정을 통하여 인지한 상대 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협약기관 모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“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”의 협약기간에 따라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(기타) 협약 내용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각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.

2018년 10 월 일



**대구대학교**  
DAEGU UNIVERSITY

단 장 윤재응

*윤재응*



**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**

센터장 김진한

*김진한*